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75조(배기구)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75조(배기구) · 조문 원문 전체

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(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제외한다)의 배기구를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

그림은 현장 점검 상황을 재구성한 설명 예시입니다. 실제 설치·사용은 법령·현장 조건·제조사 지침을 따르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-11-19